

(재)서울디자인재단 - 장애인협동조합 무의 업무협력 협약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장애인협동조합 무의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울지하철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투어 및 환승지도 제작연구와 관련한 적극적인 사업교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의 유기적인 사업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서울지하철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투어 행사지원과 환승지도 제작연구 등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및 협력한다.

1. 서울지하철 도심이동성을 위한 휠체어 체험행사 공동개최 및 지원협력
2.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지하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연구 협력
3.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지하철 환승지도 제작연구 협력
4. 중장기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지하철 환승지도 발전계획 모색을 위한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5. 공동 관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및 업무과제 개발을 위한 협력

제3조 (업무협력 추진방법)

사업방향 협의 및 결정은 양 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며, 활발한 의사 교환을 통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한 뒤 활동한다.

제4조 (분쟁해결)

1.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를 의하여 해결한다.
2. 본 협약서는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 (보안)

양 기관은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본 협약서 효력 종료 후에도 비밀 유지의 의무는 유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협약내용의 개정)

제2조(협력분야)를 이행하기 위한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내용의 삽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효력 및 해지)

1.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협약을 연장 및 조정할 수 있다.
3. 본 협약서의 효력을 중도에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양 기관은 위와 같이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며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03.17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이근" (Lee Geun), written over a horizontal line.

muui

장애인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홍 윤 희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홍윤희" (Hong Eun-hee), written over a horizontal line.